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3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3

I. 개요

1.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2.

(3) 회 부 일 : 2025. 9.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 이용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상 소비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30%¹⁾,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⑤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체육시 설이용료 등	30%		도서 등		-
---	-----	--	------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³⁾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⁴⁾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4조 884억원에 달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3,859억원, 2026년에는 4조 6,2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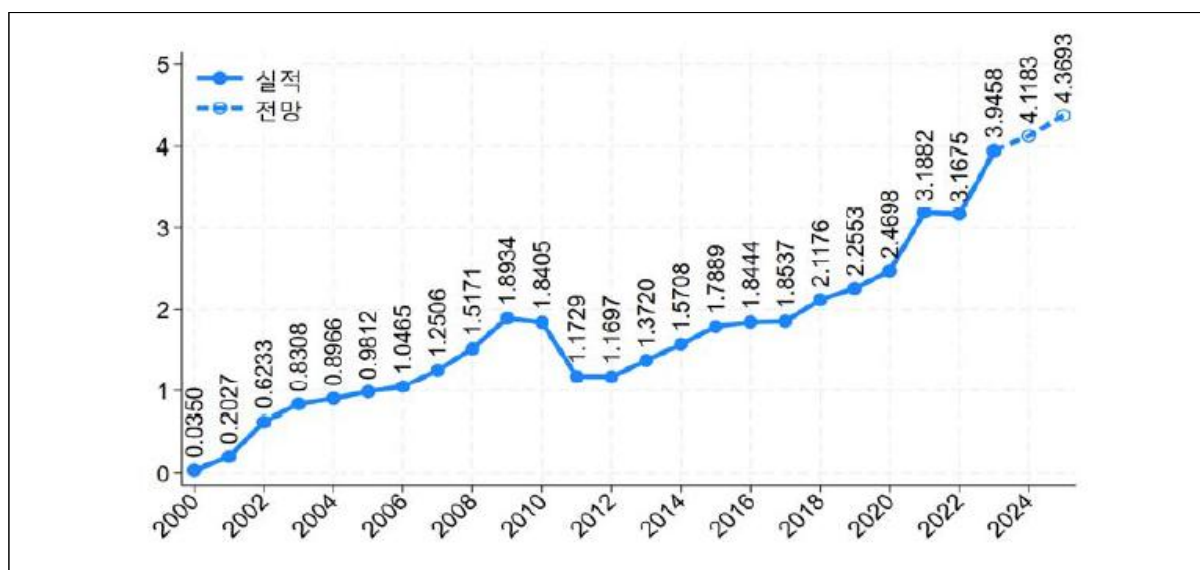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액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0,884	43,859	46,29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 9.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전재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김재섭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추경호의원안(2), 양부남의원안, 조승래의원안, 박홍근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공제 한도:	○ 공제 한도: (현행과 같음)																								
<table><tr><td colspan="2"></td><td>총급여</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d rowspan="3">-</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	대중교통	문화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																					
	대중교통																								
	문화비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전재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추경호의원안(12194), 추경호의원안(12274), 양부남의원안, 조승래의원안, 정부안) 2030년 12월 31일 (김재섭의원안, 최은석의원안)																								

* 전재수의원안 2025. 4. 15. 발의(의안번호 9834), 한정애의원안 2025. 6.5.(의안번호 10663), 김재섭의원안 2025. 6. 18. 발의(의안번호 10916), 최은석의원안 2025. 6. 25. 발

의(의안번호 11071), 이수진의원안 2025. 7. 14. 발의(의안번호 11458), 박충권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4), 추경호의원안 2025. 8. 14. 발의(의안번호 12194), 추경호의원안 2025. 8. 20. 발의(의안번호 12274), 양부남의원안 2025. 9.12. 발의(의안번호 12932). 조승래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11), 박홍근의원안 2025.10. 27. 발의(의안번호 1372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12건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재수의원안, 한정애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추경호의원안(12194), 추경호의원안(12274), 양부남의원안, 조승래의원안, 박홍근의원안,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김재섭의원안, 최은석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2024년 4조 884억원이고, 2025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3,859억원, 2026년의 잠정 조세지출 규모는 4조 6,297억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특례 항목에서 4번째로 큰 규모로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 가계의 세 부담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실상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소득공제가 일몰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동 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임. 그런데 약 20년이 넘게 동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현금영수증 수취 문화의 정착 등이 이루어져 과세표준의 양성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임. 2024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는 약 296억 7천만 건에 달하며, 결제금액은 약 1,316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결제 건수는 약 103억건, 결제금액은 약 442조원 증가하였음. 또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 건수도 약 45억 8,300만건 수준이고, 관련 거래액도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연도별 신용카드 등 결제 현황]

(단위: 천건, 십억원)

연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3년	2024년
건수	1,009,462	4,017,248.1	10,069,586.2	19,341,790.9	28,608,422.5	29,667,394.6
금액	229,951.4	423,063.4	648,263.9	874,205.4	1,262,875.4	1,316,056

*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IC카드를 포함

자료: 「지급수단별 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및 발급건수]

(단위: 억원, 백만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
발급금액	1,185,761	1,230,447	1,420,393	1,562,471	1,671,235
발급건수	4,508	4,132	4,327	4,476	4,583

자료: 「9-3-3.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I (지역, 업태, 발급금액)」, 국세통계포털(TASIS)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미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고,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납세자에게 까지 동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결제수단 양성화라는 행태의 변화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중손실 발생 등 비효율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특히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2025년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도를 축소하더라도 전자 결제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됨.⁵⁾

둘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더 크게 귀착되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특례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써, 「소득세법」 상 더 높은 한계세율⁶⁾에 직면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여력이 더 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더 큰 세제혜택이 귀착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

5)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9.

6)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	45%

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들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약 4조~4.8조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추계 내역]

(단위: 억 원)

세수효과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전재수의원안(일몰 연장)	△38,956	△41,364	△43,921	-	-	△124,241	△41,434
한정애의원안(일몰 연장)	△38,490	△40,869	△43,396	-	-	△122,755	△40,918
김재섭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46,078	△48,926	△217,760	△43,552
최은석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46,078	△48,926	△217,760	△43,552
이수진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	-	△122,755	△40,918
박충권의원안(일몰연장)	△38,490	△40,869	△43,396	-	-	△122,755	△40,918
추경호의원안(일몰연장)	△45,323	△48,107	△51,080	-	-	△144,510	△48,170
양부남의원안(일몰연장)	△45,323	△48,107	△51,080	-	-	△144,510	△48,170
조승래의원안(일몰연장)	△45,323	△48,107	△51,080		-	△144,510	△48,170

문 의 처

02)6788-5149